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15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김윤덕·박상혁·정춘숙

윤후덕 · 강훈식 · 민병덕

신동근 · 임종성 · 윤재갑

이정문 · 황 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빈집의 수용·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